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2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4호, 2019. 5. 2.>	부칙 < 제7114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30%(제로페이 이용자))×5%(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20.1~12(1년)

구분	사업수익 (18.1~12월)	제로페이 이용 결제 (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손실액 (5% 할인)**	비고
금액 (단위 : 천원)	44,325	13,298	**665**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고성봉 (02-2133-5816)